

**Public Health Program**

149 West 24<sup>th</sup> Street 6<sup>th</sup> Fl,  
New York, NY 10011  
Tel:(212) 463-9685 / Fax:(212) 463-8347  
www.kcsny.org

137-139 West 25<sup>th</sup> Street, 12<sup>th</sup> Floor  
New York, NY 10001  
Tel: (212) 627-2227 Fax: (212) 627-9314  
www.thenyic.org

**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!**  
**뉴욕주의 새로운 병원 언어지원 법안**

2006년 9월 13일 부터 모든 뉴욕의 사립병원과 공립병원의 새로운 언어지원 법안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. 이 새로운 법안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의사소통에서 오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귀하가 병원에서 언어소통이 불편하거나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일 경우 무료로 통역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. 병원에 갔을 시 아래의 사항을 병원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

**병원에서는 반드시:**

- ◆ 귀하가 처음에 사용하기 편한 언어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하고 귀하의 언어로 언어소통을 해야합니다. 병원에서는 다음 방문에 대비해 귀하의 언어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◆ 귀하의 언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통역자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◆ 귀하가 필요한만큼 시간 제한 없이 통역자가 제공되어야 합니다. 병원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는 이중언어 구사자, 전화음성서비스 또는 통역자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◆ 무료 통역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◆ 무료 통역서비스에 관한 안내판이 있어야 합니다.
- ◆ 귀하의 언어로 병원 청구서, 보험 정보와 재정 보조에 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.
- ◆ 16살 미만인 사람을 통역자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.
- ◆ 가족이나 동료와 같이 동행하는 경우에도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.

만약 아래의 일들이 뉴욕에서 귀하에게 일어난다면 KCS (Korean Community Services) 공공보건부로 전화(212-463-9685)주십시오. 저희는 귀하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병원이 위반한 법안을 바로 잡는데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

**만약에 귀하가 (에게):**

- ◆ 병원에서 귀하의 언어로 통역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는다고 말했을 경우
- ◆ 영어로 의사전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무료 통역자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
- ◆ 통역자를 요청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귀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을 경우
- ◆ 병원에서 통역자를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대기실에 있는 제 삼자를 통역자로 할것을 요구할 경우
- ◆ 병원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귀하가 쓰는 언어가 아니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
- ◆ 서명한 병원 서류 중 귀하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않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
- ◆ 병원에서 제공한 통역자가 귀하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을 경우

**병원은 귀하의 언어, 인종 또는 이민 신분에 따라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.**  
**병원은 이민정부 관계자들과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.**